

퇴직하시나요?

이것만은

꼭!

공직자 공통 의무

취업청탁 금지

재직 중 본인의
취업청탁 **NO!**



부정한 청탁·알선 금지

재직자의 공정한
직무수행을 방해하는
부정한 청탁알선 **NO!**



취업제한

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
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시
심사청구 의무



업무취급제한

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
일정 업무*의 영구 취급 **NO!**
*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



고위공직자 등* 추가 의무

업무취급제한

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
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일정업무* 취급 **NO!**
*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

업무내역서 제출

퇴직 후 2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
취업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
(퇴직 후 1년 경과 후 1개월 내)

취업사실신고서 제출

퇴직 후 10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
취업시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의무
(취업일부턴 1개월 내)

* "고위공직자 등"이란? (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)

재산공개대상자, 2급 이상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원 (특정 공직유관단체 1급 이상 직원) 등

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 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
공직윤리시스템(www.peti.go.kr)의 「퇴직하시나요? 이것만은 꼭!」 안내책자를 참조해주세요.